##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에 대한 변경대비표

쪽	현행(2023.04.26. 개정)	개정안 (2024.04.30. 개정 예정)	사유
p.1	1.1. 목적 및 적용 범위	1.1. 목적 및 적용 범위	
	○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변경포	○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변경포	
	함) 시 제출되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	함) 시 제출되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	
	한 참고자료로 신청자 및 심사자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	한 참고자료로 신청자 및 심사자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으로 한다.	
	○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	○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	
	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변경	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변경	
	포함)를 위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동 규정 제27조	·	
	에 따라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로서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 적용범위 명확화
	<u>에 적용한다.</u>	또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	70011099
	- 원료약품 종류와 농도의 차이는 유효성분 흡수와 작용 등	<u>우</u> 에 적용한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험		
	약은 별도 임상 근거가 있지 않은 한 대조약의 원료약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험	
	그 분량을 고려하여 제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은 별도 임상 근거가 있지 않은 한 대조약의 원료약품 및	
	<u>&lt;신설&gt;</u>	그 분량을 고려하여 제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첨가제 농도 인정
		료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에	범위 명확화
		관한 자료를 갈음할 수 있고, 각 첨가제의 농도가 공고대	
	- 다만, 변경 가능한 첨가제의 원료약품 종류와 분량이 변경	조약의 ±5%이내인 경우 동일한 농도로 인정가능하다.	
	되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27조제3항에	· ·	
	적합한 의약품은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	되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27조제3항에	
p.2	2.1. 대조약	적합한 의약품은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 2.1. 대조약	
P.2		Z.1. 네끄터	

쪽	현행(2023.04.26. 개정)	개정안 (2024.04.30. 개정 예정)	사유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제3조의2에 따른다.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제3조의2에 따른다.	
	• 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의 배치는 제품 특성에 따른 물리	• 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의 배치는 제품 특성에 따른 물리	
	화학적 평가를 통해 다수의 배치 간 편차 등을 확인하고, 대표	화학적 평가를 통해 다수의 배치 간 편차 등을 확인하고, 대표	
	성이 있는 배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이 있는 배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조약 배치 간 편차는 동일한 시기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	• 대조약 배치 간 편차를 확인하는 시험은 동일한 시기에 확	- 문구 명확화
	직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시험항목 별로 타당성(예시: 일	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시험항목 별로	
	간 정밀성 또는 기기 일일 점검(밸리데이션이 요구되지	타당성(예시: 일간 정밀성 또는 기기 일일 점검(밸리데이	
	않는 경우에 한함) 등)을 제시한다.	션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을 제시한다.	
p.4	2.8. 제형별 평가항목	2.8. 제형별 평가항목	
	• 대표적인 제형에서 대조약과 시험약 간의 동등성 평가가 필	• 대표적인 제형에서 대조약과 시험약 간의 동등성 평가가 필	
	요한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아래 예시 항목을 고려하	요한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아래 예시 항목을 고려하	
	여 평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으나, 개별 제품의 특성에 따	여 평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으나, 개별 제품의 특성에 따	
	라 기타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라 기타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그 외 제형의 경우 제형의 제제학적 특성, 아래 예시 항목,	• 그 외 제형의 경우 제형의 제제학적 특성, 아래 예시 항목,	
	성분별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등을 고려하여	성분별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필요시 식약처와 사전에 <u>상의</u> 한다.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필요시 식약처와 사전에 <u>상담</u> 한다.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 평가항목은 대조약과 시	• 평가항목 선정은 대조약을 기준으로 하며, 시험약에 해당	- 문구 명확화
	<u>험약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u> 시험약은 해당 사항이 없더	사항이 없더라도 대조약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	
	라도 대조약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으로 설	항목으로 설정한다.	
	정한다.		A .1 -1-1
p.5	3) <u>내용액제</u> (액상 제제 또는 사용 시 녹여 복용하는 제제. 다만,		- 용어 성성
	유제 및 현탁제 제외)	유제 및 현탁제 제외)	

쪽		현히	생(2023.04.26. 개정)		개정안	(2024.04.30. 개정 예정)	사유
	연번	평가 항목	비고	연번	평가 항목	비고	
	1	성상		1	성상		
	2	рН		2	рН		
	3	비중 또는 밀도		3	비중 또는 밀도		
	4		완충제 또는 완충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4	<u>삼투압</u>	삼투압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 평가항목 문구
	5	저ㄷ	포함된 경우 점도조절제 고분자물질 또는 점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	5	완충력	완충제 또는 완충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이 포함된 경우	명확화
	6	용해시간 용	분이 포함된 경우 용 시 조제인 경우	6	점도	점도조절제, 고분지물질 또는 점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8		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평가 필요한	7	용해시간	용 시 조제인 경우	
		6	항목	8	기타	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평가 필요 한 항목	
	(1)	용제제   액제		(1)	용제제 ) 액제		
	연번	평가 항목	비고	연번	평가 항목	비고	
	1	성상		1	성상		
	2	pH		2	pH		
	4	비중 또는 밀도 삼투압	삼투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허가(신고) 사항의 원료약품 및 분량, 용법·용량, 효능·효 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고) <u>&lt;신설&gt;</u>	4	비중 또는 밀도 삼투압	삼투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허가(신고) 사항의 원료약품 및 분량, 용법·용량, 효능·효 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고)	- 평가항목 문구 명확화
	5	완충력	완충제 또는 완충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이 포함된 경우			<u>단, 피부에 적용하는 제제는 제외</u>	
	6	점도	점도조절제, 고분자물질 또는 점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5	완충력	완충제 또는 완충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7	점적용량(또는 분무 용량 및 입자도)		6	점도	점도조절제 고분자물질 또는 점도에 영향을 마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8	기타	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평가 필요 한 항목	7	점적용량(또는 분무 용량 및 입자도)	경우)	
				8	기타	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평가 필요 한 항목	

쪽	현행(2023.04.26. 개정)				개정안 (20	024.04.30. 개정 예정)	사유
	(2) 년	반고형제제		(2) 빈	<u> </u> 고형제제 <u>(크림, 연</u>	고 <u>,</u> 겔제 등)	- 평가항목 명확화
	연번	평가 항목	비고	연번	평가 항목	비고	
	1	성상		1	성상	·	
	2	pH		2	рН		
	3	비중 또는 밀도		3	비중 또는 밀도		
	5	점도 입도 또는 입도분포		5	점도   입도 또는 입도분포		
	6	유동학적 특성	제제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선정예) 유동곡선(전단응력과 전단속도와의관계), 퍼짐성(부드러운 제제), 침입도(단단한 제제) 등	6	유동학적 특성	제제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선정 예) 유동곡선(전단응력과 전단속도와 의 관계), 퍼짐성(부드러운 제제), 침 입도(단단한 제제) 등	
	7	방출시험		7	방출시험		
	8	기타	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평가 필 요한 항목 예) 분배계수 등	8	기타	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평가 필 요한 항목 예) 분배계수 등	
p.16	1. 기호	· 기가 사항과 다른 원회	료약품 및 분량인 제네릭의약품 허가	1. 기호	허가 사항과 다른 원료	약품 <u>종류 및 농도</u> 인 제네릭의약품 허가	- 고시 개정사항 반영
	의 기	허가사항과 상이한 사제, 점안제, 점이제 종류 및 <u>분량이</u> 동 고 안전성·유효성을 제, 완충제, 항산화자 우나 점안제나 점이 제, pH 조절제의 종 의 작용에 영향을 다 정성시험자료 등)를	제네릭의약품 허가 시 원료약품 및 분량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는 기본적으로 기허가 사항과 원료약품 일해야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사제의 보세, pH 조절제의 종류 또는 농도가 다른 제의 보존제, 완충제, 등장화제, 점도조 휴류 또는 농도가 다른 경우에는 유효성미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제출해야 합니다. 기허가 사항과 위의서 종류는 동일하나 분량만 상이한 경우를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도가 고 주 의 출 로 전 성 역 경	기 허가사항과 상이한 사제, 점안제, 점이제   종류 및 <u>농도가<sup>1)</sup> 등</u> 하고 안전성·유효성·   존제, 완충제, 항산호   경우나 점안제나 점   절제, pH 조절제의   분의 작용에 영향을  비: 안정성시험자료    의 예시 이외의 첨기	에네릭의약품 허가 시 원료약품 종류 및 농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는 기본적으로 기허가 사항과 원료약품 동일해야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사제의 하제, pH 조절제의 종류 또는 농도가 다 점이제의 보존제, 완충제, 등장화제, 점도 종류 또는 농도가 다른 경우에는 유효는 미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허가 사항과 하세에서 종류는 동일하나 <u>농도</u> 만 상이한 집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첨가제 농도 인정 범위 명확화

쪽	현행(2023.04.26. 개정)	개정안 (2024.04.30. 개정 예정)	사유
		<u>농도로 인정가능하다.</u>	
p.17	3. 국제공통기술문서	3. 국제공통기술문서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평가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는 CTD 어디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평가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는 CTD 어디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비교임상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갈음하는 것으로서, <u>제5부에</u> 포함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ul> <li>이화학적동등성시험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비교임상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갈음하는 것으로서, 제3부 또는 제5부에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li> </ul>	
p.18	7.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대조약 선정	7.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대조약 선정	
~19	1989년 이후의 신약에 해당하는 품목이나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대조약으로 공고되지 않은 경우 대조약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1989년 이후의 신약에 해당하는 품목이나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대조약으로 공고되지 않은 경우 대조약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1989년 이후 신약으로 공고한 전문의약품은 공고대조약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약으로 공고한 품목과 제제학적 차이 (분말 & 액상)가 있는 품목을 제네릭으로 개발 하고자 할 경우는 대조약 <u>공고 요청</u> 을 통해 대조약 선정에 대 한 타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약으로 공고한 품목과 제제학적 차이 (분말 & 액상)가 있는 품목을 제네릭으로 개발	- 용어 정정
	8. 대조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이화학적동등성시험	8. 대조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이화학적동등성시험	
	1989년 이후의 신약 또는 의동확보고시 성분의 제네릭의약품의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품목생산중단 등의 사유 로 공고대조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u>&lt;</u> 삭제> 제네릭의약품의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품목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공고대조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고시 개정사항 반영
	□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대조약을 구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 우에는 새로운 대조약의 <u>공고</u> 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고 여부	☞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대조약을 구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 우에는 새로운 대조약의 <u>선정</u> 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고 여부	- 용어 정정

쪽	현행(2023.04.26. 개정)	개정안 (2024.04.30. 개정 예정)	사유
	를 확인한 후 이를 시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를 확인한 후 이를 시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19	9. 평가항목의 선정	9. 평가항목의 선정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제출하여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물리화 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제출하여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물리화 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요?	
	□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평가항목은 성상, 제형, 첨가제 조성 및 등급, 투여방법 등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파악하여, 타당한 항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성분별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필요시 식약처와 사전에 <u>상의</u> 한다.	등급, 투여방법 등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및 유효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파악하 여, 타당한 항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성분별 생동성시험 가이	- 문구수정
	배합목적이 점도조절제인 첨가제가 없는 경우, 점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요?	대조약 배합목적이 점도조절제인 첨가제가 없는 경우, 점도시 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요?	- 문구 명확화
	"" 배합목적이 점도조절제인 첨가제가 없는 경우에도 대조약 또는 시험약의 주성분 또는 첨가제가 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고분자, 점성 성분, 만니톨, 소르비톨 등 포함)에는 대조약과 시험약의 점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있는 경우(고분자, 점성 성분, 만니톨, 소르비톨 등 포함)에는	
	삼투압시험을 이화학적동등성시험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삼투압시험을 이화학적동등성시험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 주사제는 삼투압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점안제 또는 점이제, 외용액제 <u>등에</u> 삼투압을 유의적으로 조절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허가(신고)사항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	· ———	- 문구 명확화

쪽	현행(2023.04.26. 개정)	개정안 (2024.04.30. 개정 예정)	사유
	용상 주의사항에서 삼투압 관련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 조약과 시험약의 삼투압을 측정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20.	10. 경구용 액제의 첨가제	10. 경구용 액제의 첨가제	
	경구용 액제의 유효성분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가제의 예시 는?	경구용 액제의 유효성분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가제의 예시 는?	
	☞ 비타민 E, 소르비톨, 만니톨 및 계면활성제 등이 해당됩니다.	☞ 비타민 E, 소르비톨, 만니톨 및 계면활성제 등이 해당됩니다.	
	* 관련근거 :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ies submitted in NDAs or INDs (FDA 2014 draft guidance) 및 4. 참고문헌 1) Guideline on the Investigation of Bioequivalence(EMA 2010 Guideline)	_ =	
	<신설>	경구용 액제 중 주성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가제 가 포함된 경우 동등성입증 방법은?	- 상세한 평가방법 추가
		당알코올(소르비톨, 만니톨, 말티톨 등) 및 계면활성제, 비타민 E, 등은 주성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조약과 차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종류         분량 차         평가자료           ±10% 이내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동일         10% 초과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및 첨가제가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이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및 첨가제가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조1)         이세나         이네시나	
		<u>주1) 예시 : 인체 PK (논문자료 포함), 동물 PK(대조약과 시험약),</u> <u>BCS class I 입증자료 등</u>	

쪽	현행(2023.04.26. 개정)	개정안 (2024.04.30. 개정 예정) 사유
		* 관련근거: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ies submitted in NDAs or INDs (FDA 2014 draft guidance) 및 4. 참고문헌 1) Guideline on the Investigation of Bioequivalence(EMA 2010 Guideline)
p.22	<신설>	13. 점도시험법과 동등성판정기준 - 상세한 평가방법
		점도 시험방법과 동등성 판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요?
		☞ 일반적으로 예비시험을 통해 뉴튼 또는 비뉴튼 유체임을
		확인한 후 제제 특성에 따른 측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야 합니다(다만, 해당제제가 저점도(100cP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비뉴튼이
		확인되어 제2법으로 점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
		<u>단속도(예, 0.01 ~ 1000/s)에서의 점도프로파일을 확인할 수</u>
		있도록 하고, 점안주사제의 경우에는 임상적용환경을 고려
		<u>하여 다양한 전단속도(예, 0.001 ~ 1000/s)에서의 점도프로</u>
		파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제형별 측정방법과 평가기준
		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제형</u> <u>구분 측정방법(측정범위)</u> 평가기준
		<u> </u>
		<u>주사제 맑은주사제(IM),</u> <u>뉴튼 KP 제1법 또는 제2법 ±10%</u>
		<u>점조성 있는 관절강 주시,</u> <u>점조성 있는 점인주시제</u> 비뉴튼 제2법(0.01 ~ 1000/s) <u>±10%</u>
		<u> 저점도(100cP미만)</u> <u>× KP 제1법 또는 제2법</u> <u>±10% 또는</u> <u>±10cP이내</u>
		점안제 변탁성, 고점도 뉴튼 KP 제1법 또는 제2법 ±10% 비뉴튼 제2법(0.01 ~ 1000/s) ±10%
		<u>경구용</u> <u>액제</u> <u>저점도(100cP미만)</u> <u>×</u> <u>KP 제1법 또는 제2법</u> <u>±10% 또는</u> <u>±10cP이내</u>

쪽	현행(2023.04.26. 개정)	개정안 (2024.04.30. 개정 예정)	사유
		고점도         뉴튼         KP 제1법 또는 제2법         ±10%           비뉴트         제2법(0.01 ~ 1000/s)         ±10%           * 평가기준은 대조약과의 ±10%로 정하되,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타당한 설정근거를 제시	
		저점도(예, 100cP 미만) 액제에서도 다양한 전단속도(예, 0.01 ~ 1000/s)에서의 점도 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험 등을 통해 점도가 낮음(예, 100cP 미만)이 확인될 때 KP 제 1법 또는 제2법으로 점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점도프로파일(0.01~1000/s 전단속도) 동등성 평가 시 특정 전 단속도(예, 0.01, 0.1, 1.0, 10, 100 및 1000/s 등)에서 평가하는 것이 인정 가능한가요?	
		© 전단속도 0.01~1000/s 범위에서 점도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점(예, 30~50 point 등)에서 측정하여 전시점에서 대조약과 동등성을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